

의안번호	제 408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9월 일 (제 283 회)

**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09년 9월 2일

##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9. 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1. 제안이유

「평생교육법」(법률 제8852호, 2008.2.29, 공포·시행)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을 제21조로 함(안 제1조)

나. 용어 등의 개정

- (1) "~의 규정에 의거" → "에 따라"
- (2) "기타" → "그 밖에"
- (3) "범위 안에서" → "범위에서"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기타

- (1) 입법예고 : 생략
- (2) 신구조문대비표 별첨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제5항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평생교육법 [법률 제9641호, 2008.2.29, 공포·시행]

제21조 (시·군·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·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평생교육법 제13조제</u> <u>항의 규정</u>에 의거 충청북도 평생학습관을 지 정·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기능)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1. ~ 4. (생략) 5. <u>기타</u>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</p> <p>제4조(지원)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평생교육법</u>」 제21 <u>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기능)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그 밖에</u> -----</p> <p>제4조(지원) -----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.</p>